

제318회 임시회
2013.3.15.(금)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「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2013. 3. 15. (금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정 현 의원 외 6명

나. 발의일자 : 2013년 2월 25일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2월 26일

라. 상정일자 : 2013년 3월 6일

(제3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정 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의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특산품의 육성 및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 미흡한 점을 개정함으로써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운영위탁 기간 및 갱신을 상위법령에 따라 운용하고자 이를 삭제(안 제5조)
- 위탁의 취소사유중 제6조 수탁자 의무 위반자도 취소할 수 있도록 조항 변경(안 제7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: 나기성)

- ‘충청북도의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충청북도의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특산품의 육성 및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 미흡한 점을 개정함으로써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제6조의 의무 및 약정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단체의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운영의 위탁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<u>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,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5조(운영의 위탁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(삭제)</p>
<p>제7조(위탁의 취소)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1. <u>허가한 재산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</u></p> <p>2. ~ 4. (생략)</p>	<p>제7조(위탁의 취소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제6조의 의무 및 약정조건을 위반하였을 때</u>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
관 계 법 령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

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(轉貸)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
2.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
3.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
4.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

5.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- 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-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④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·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·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.

【참고자료】

충청북도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현황

1. 기본현황

- 사업기간 : 1993. 12 ~ 1995. 5
- 위 치 : 청주시 상당구 읍봉로 187번지길 10-2(읍량동 877)
- 준 공 : 1995년 5월 29일 (857백만원, 국비50%, 도비50%)
- 면 적 : 부지 1,102.5㎡, 건평 1,403.9㎡(지하1층, 지상3층)

2. 위탁운영절차

- 위탁기간 :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
- 신청자격 : 충청북도에 주사무소를 둔 농촌특산단지충청북도연합회 또는 농업인단체
- 선정방법 : 위탁운영자 선정 공고 → 신청서접수 → 운영위원회에서 업체 선정 → 유상사용허가
- 사 용 료 : 재산평정가격의 10/1000 ※ 연 13백만원정도

3. 위탁업체 및 매출실적(최근)

- 위탁자 : (사)충청북도농어촌특산단지연합회
- 매출실적 : '11)4,152백만원, '12) 3,897백만원
※ 감소사유 : 경제불황에 따른 소비급감
- 위탁기간 : '07.9.1~'13.8.31 → 매 3년